

군용총포등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저장허가를 받은 자의 안전교육 계획의  
기준(제43조의3 관련)

항 목	내 용
1. 안전교육 대상	<p>자체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업소는 다음과 같다.</p> <p>가. 「방위사업법 시행령」 제6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군용총포등의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업소</p> <p>나. 「방위사업법 시행령」 제66조제1항제8호에 따라 군용총포등의 저장허가를 받은 업소</p>
2. 안전교육 계획의 기준	<p>가. 자체적인 안전교육 계획의 내용·방법·시기를 정한다.</p> <p>나. 군용총포등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저장허가를 받은 자는 종업원의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교육을 실시한다.</p> <p>(1) 간부 종업원 및 안전 관계 종업원에 대한 안전교육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(가) 안전의식의 제고에 관한 사항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(나) 군용총포등 일반의 성질 및 성능개요에 관한 사항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(다) 제조·저장하는 군용총포등의 조성, 성질 및 성능에 관한 사항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(라) 제조시설 또는 저장시설의 구조·위치 및 설비의 기술상 기준 등에 관한 사항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(마) 제조시설 또는 저장시설의 제조방법 및 저장상 취급의 기술상 기준 등에 관한 사항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(바) 제조시설 내 운반 등 사업장 내부 운반에 관한 사항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(사) 제조작업일지 또는 저장시설에서의 저장현황 및 출납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(아) 위험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대피방법 등 전반에 관한 사항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(자) 그 밖의 군용총포등의 제조·저장 및 이에 따른 취급상의 안전관리 기술에 관한 사항</p> <p>(2) 일반 종업원의 교육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(가) 안전의식의 제고 및 군용총포등 일반의 성질개요에 관한 사항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(나) 작업 예정이거나 작업 중인 제조·저장 관련된 군용총포등의 성질에 관한 사항</p>

	<p>(다) 사용 예정이거나 사용 중인 군용총포등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의 구조·위치 및 설비의 기술상 기준에 관한 사항</p> <p>(라) 제조·취급 예정 또는 제조·취급 중인 군용총포등 제조방법 및 저장상 취급의 기술상 기준 등에 관한 사항</p> <p>(마) 제조시설 내 운반 등 사업장 내부 운반에 관한 사항</p> <p>(바) 제조작업일지 또는 저장시설에서의 저장현황 및 출납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</p> <p>(사) 위험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대피방법 등 전반에 관한 사항</p> <p>(아) 그 밖에 군용총포등의 제조 및 저장상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</p> <p>(3) 미숙련 종업원의 교육</p> <p>(가) (2) 일반 종업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</p> <p>(나) 그 밖에 군용총포등의 제조 및 저장상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</p> <p>다. 안전교육은 안전책임자와 군용총포등의 제조 또는 취급에 대한 안전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실시한다.</p> <p>라. 안전교육은 종업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필요한 지식을 배워 익힐 수 있도록 적당한 기간을 두고 반복하여 실시한다.</p> <p>마. 미숙련 종업원에게는 위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해당 제조작업 등 취급에 종사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.</p>
--	---